

산업안전 Q&A

Q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선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선정의 법적 신고의무 기준
2. 선정시 자격기준과 교육이수 사항
3.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교체시 신고방법

A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지방노동관서장은 산업재해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근로자단체·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예방관련전문단체에 소속된 자 중에서 위촉

2. 명예감독관 위촉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의2)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의 제조업, 운수·창고·통신업 및 광업 사업장과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의 건설 사업장,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의 기타 산업 사업장에서 근로자 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추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에 소속된 임·직원중에서 당해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가 추천하는 자

- 전국 규모의 사업주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중에서 당해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자

- 산업재해예방관련 업무를 행하는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당해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자

다만, 사업장 소속 명예감독관으로 추천된 자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이거나 또는 이에 준하는 사용자에게 해당 되는 경우에는 위촉 불가

3. 명예감독관 교육이수 사항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노동부예규 제444호, 2000.7.10)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명예감독관의 재해예방활동에 필요한 산업안전보건법령 등 재해예방활동 관련 교육을 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명예감독관이 소속한 사업주 및 단체의 장은 명예감독관이 교육을 이수하는데 따른 임금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교육이수에 적극 협조하도록 규정

4. 명예감독관 해촉 통보 등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당해 사업장에 위촉된 명예감독관 해촉을 요청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의3 규정에 의하여 명예감독관을 해촉시에는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고 후임자를 빠른 시일내에 위촉하여야 하며 위촉시에는 명예감독관 추천·위촉동의서 1부 및 증명사진 2매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Q
 동일 현장내(택지조성현장 발주처A, 공사금액 약 300억) 공사진행 중에 관로공사를 별도로 발주하여(발주처B, 공사금액 약 6억) 시공 할 경우 각각의 계약건별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자 선임 및 안전관리비 계상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A
 동일 공사현장에서 공사진행 중 추가로 발주한 공사에 대하여는 동공사가 기존공사의 일부로써 최종 공작물 등의 완성에 필요한 공사로 동질성을 유지하고 시간적 장소적으로 연관되어 노무관리 등이 동시에 이루어질 경우는 별도로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및 건설안전 기술지도의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추가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비는 추가 공사금액에 따라 공사금액별 안전관리비 계산 방법에 의거 산정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며 질의상의 공사금액으로는 추가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Q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사업주는 사망자 ... (중략) ... 1개월 이내에...” 라고 되어 있고, 제2항에서는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 (중략) ... 24시간 이내에...”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항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제2항의 “중대재해”시는 24시간 이내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는데 제2항에서의 중대재해란 산업법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서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망자”와 “중대재해”는 같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구별되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산업재해발생 보고와 별도로 제2항에서 중대재해에 대하여는 24시간 이내에 산업재해발생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중대재해와 관련된 사망은 사업주의 관리 범위내에 있는 근로자의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고, 사업주의 관리범위를 벗어난 재해 사망(교통사고, 기존질병에 의한 사망 등)은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요양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로 산업재해발생보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중대재해 발생 시는 재해원인조사, 안전·보건 진단 기타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24시간 이내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